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1
----------	-----

제안일자 : 2009. 11.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등)

공립 및 사립학교의 수업료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주요내용

가. 징수금액(안 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조례의 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로 한다.

제2조 중 "학교"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7. 영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 고등기술학교
9. 각종학교

제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 또는 전월"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외의 부분 중 "별표 1에 의하여 4기"를 "별표 1에 따라 4

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동급의 학교"를 "같은 급의 학교"로 각각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개시"를 "시작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지급"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 중 "과오납"을 "잘못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법령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접수개시일"을 "접수시작일"로 한다.

별표 2 반환사유 발생일란 중 '개시일'을 '시작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구 조 문(현 행)	신 조 문(개 정 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용어 순화 - 목적조항 약칭 삭제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p>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 -----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7. 영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8. 고등기술학교 9. 각종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미 명확 - 법률용어 순화
<p>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면)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p>	<p>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용어 순화

구 조 문(현 행)	신 조 문(개 정 안)	비 고
<p>관한 법률」등 법령에 <u>의한</u>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u>당해</u>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p> <p>③ (생략)</p> <p>④ 학교의 수업을 <u>전기 또는 전월</u>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당해</u> 분기 또는 <u>당해</u>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p> <p>⑤ (생략)</p>	<p>----- 법령에 <u>다른</u> 수업료 및 ----- 대하여 <u>해당</u> 법령이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u>에 ----- ----- <u>해당</u> 분기 또는 <u>해당</u> 월의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u>별표 1에 의하여 4기</u>(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u>의한다</u>.</p> <p>1. 설립자가 동일한 <u>동급의 학교</u>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p> <p>2. 설립자를 달리하는 <u>동급의 학교</u>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 징수한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4조(징수방법) ① ----- <u>별표 1에 따라 4분기</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따른다</u>. 1. ----- <u>같은 급의 학교</u>----- ----- -----.</p> <p>2. ----- <u>같은 급의 학교</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 법률용어 순화
<p>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u>당해</u> 기</p>	<p>제5조(징수기일) ① ----- ----- <u>해당</u> 기</p>	- 법률용어 순화

구 조 문(현 행)	신 조 문(개 정 안)	비 고
<p>또는 <u>당해</u> 월의 <u>개시</u>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u>개시</u>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u>교부</u>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u>교부</u>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p>	<p>----<u>해당</u> 월의 <u>시작일</u> 10일 이전----- -----.</p> <p>② ----- -----학기 <u>시작일</u> 전 50일----- -----.</p> <p>③ ----- 등을 <u>지급</u>받아 ----- ----- 등의 <u>지급</u>일----- -----.</p>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u>과오납</u>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p> <p>② (생략)</p> <p>③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u>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p> <p>1. <u>법령에 의하여</u>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p> <p>2 ~ 4. (생략)</p> <p>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당해</u> 학교에 <u>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p> <p>④ (생략)</p>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 -----<u>잘못 납부</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p> <p>1. <u>법령에 따라</u>-----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u>해당</u> -----<u>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④ (현행과 같음)</p>	- 법률용어 순화
<p>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u>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u>접수개시일</u> 10</p>	<p>제7조(공고 등) ① ----- ----- <u>제2조에 따라</u>----- -----.</p> <p>② <u>제1항에 따른</u> ----- -----<u>접수시작일</u>-----</p>	- 법률용어 순화

구 조 문(현 행)	신 조 문(개 정 안)	비 고
일전에 하여야 한다.	-----.	
	<u>부칙</u>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구 조 문(현 행)	신 조 문(개 정 안)	비 고																		
<p>[별표 2]</p> <p>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81 619 981 1011"> <thead> <tr> <th>반환사유 발생일</th> <th>반환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td> <td>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td> <td></td> </tr> <tr> <td>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후</td> <td>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td> <td></td> </tr> </tbody> </table>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비고	1분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1분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p>[별표 2]</p> <p>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037 619 1834 1011"> <thead> <tr> <th>반환사유 발생일</th> <th>반환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분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td> <td>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td> <td></td> </tr> <tr> <td>1분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후</td> <td>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td> <td></td> </tr> </tbody> </table>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비고	1분기 시작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1분기 시작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p>- 법률용어 순화</p>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비고																		
1분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1분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비고																		
1분기 시작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1분기 시작일 (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